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지역과 대학발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향서 제출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별도 안내될 예정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

⊕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 경영지원, 투자유치, 실증·검증, 판로확대, 해외진출, 기관·기업 연계 등
*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별첨 2]

* 사업화 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3월 ~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351명 내외

- (유형을 제한하여 선정) 창업중심대학별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며, ① 대학발 창업 및 ② 지역 일반 유형으로 선정 예정

< 창업중심대학별 예비창업자 선정 규모 >

창업 중심대학	① 대학발 창업	② 지역 일반	⇒ 351명 내외 선정 (대학별 39명)
	지역 제한 없음 144명 내외 (대학별 16명 내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한 207명 내외 (대학별 23명 내외)	
우대사항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60% 선정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24.1.12.)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공고일 ('24. 1. 12.) 기준 신청자가 국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기준 50/100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 ('24.1.1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협약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이중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2.1.)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금융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24.2.1.)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1] 참조)
-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단, '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⑦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⑧ '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⑨ '24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유형 :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 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 신청자는 1개 대학 및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

창업중심대학	모집유형 및 대학별 선정 규모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	
	지역 제한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 지역 제한	
한양대학교	16명 내외	서울, 경기, 인천	23명 내외
성균관대학교	16명 내외		23명 내외
한남대학교	16명 내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3명 내외
호서대학교	16명 내외		23명 내외
경상국립대학교	16명 내외	부산, 울산, 경남	23명 내외
부산대학교	16명 내외		23명 내외
강원대학교	16명 내외	강원	23명 내외
대구대학교	16명 내외	대구, 경북	23명 내외
전북대학교	16명 내외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3명 내외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1984.1.13. 이후 출생한 자, 1.13일 포함) 60% 선정 예정

[유형①] 대학발 창업 [144명 내외]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아래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소속대학, 주소지 무관)

< 대학발 창업 인정범위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필수 충족) >

구 분	세부 내용
소속	① 대학(원) 재·휴학생 또는 재(휴)직 중인 교원·교직원 예비창업자
인프라	② 대학 보육 공간(BI)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팀)
기술	③ 대학과의 기술이전(양도) 계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
투자	④ 대학의 지분투자를 받은 예비창업자
발굴	⑤ 창업중심대학 및 협력기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예비창업자

* 창업중심대학을 포함한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등 전체 대학을 의미

◆ ‘대학발 창업’ 유형 주요사항	
■ (소속) 공고일(‘24.1.12.)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 2호’에 해당하는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포함)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재·휴직 중인 교원·교직원 예비창업자	
*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필수 제출	
* 공고일(‘24.1.12.) 기준 입학예정자, 졸업생 및 퇴직 교원·교직원 제외	
* 해외 대학의 경우, 재적·재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수 제출	
■ (인프라) 공고일(‘24.1.12.)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Bi-NET(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상 대학이 운영주체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예비창업자(팀)	
* 해당 창업보육센터 확인이 가능한 증빙(입주사실확인서, 공문 등) 필수 첨부	
* [https://www.smes.go.kr/binet] - [정보마당] - [센터현황] - [센터검색] - [사업자구분] - [대학]을 통해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기술) 공고일(‘24.1.12.) 기준 동 사업 신청 제품·서비스 관련, 대학(산학협력단 등)을 계약당사자로 기술이전(양도) 계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24.1.12.) 기준 기술이전(양도)계약서 기반 계약체결 완료 건에 한하며 증빙 필수 제출	
■ (투자) 공고일(‘24.1.12.) 기준 대학(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예비창업자	
* 공고일(‘24.1.12.) 이전 투자계약서 등 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증빙 필수 제출	
■ (발굴) 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과 협업을 통해 발굴된 예비창업자 중 창업중심대학 추천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자	
* 공고일(‘24.1.12.) 이후 신청 창업중심대학의 추천 대상 예비창업자로 확인된 기업에 한함	

[유형②] 지역 일반 [207명 내외]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24.1.12.),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이 소재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의 경우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 ‘지역 일반’ 유형 주요사항	
※ (권역선택 주의) ‘지역 일반’ 유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의 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요건검토 탈락 처리	
신청 예시	제주시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C는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산대에 신청하면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탈락’ 처리

3 선정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4. 3월 ~ ‘24. 12월 예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사업비와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① 정부지원사업비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5천만원 내외(최대 1억원)
 - * 창업 아이템,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 정부지원사업비는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② 단계별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지원
 - * 창업중심대학별 세부 프로그램은 대학별 소개자료(별첨 2) 참고
- (예비)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예비창업자 선정 후, 수요조사를 통해 대학별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4. 1. 12.(금) ~ 2. 1.(목), 16:00까지
- 신청·접수기간 : ‘24. 1. 22.(월) ~ 2. 1.(목), 16:00까지
 - * 상기 기간 내 제출완료 건에 한하여 인정, 마감기한 내 제출 필수
 - ** 공고 기간과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재확인 요망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신청 시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 ②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③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⑥ 사업 신청 후 신청 대학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 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⑦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에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

○ 온라인 신청절차

절차	주요내용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접속
▼	
② 사업 공고 세부내용 확인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 메뉴에서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클릭
▼	
③ 기본정보입력	· 신청자의 기본정보 입력(1~5단계 입력) · 주관기관 선택: 9개 창업중심대학 중 1개 선택
▼	
④ 사업계획서 업로드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업로드하여 저장 ※ 업로드 파일은 50MB 이하로 설정
▼	
⑤ 제출	· '제출하기' 클릭 및 "접수(제출)완료" 여부 확인
※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3]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1]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
- 기타 제출서류 ※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주의사항	비고
① 사업신청서 (시스템 내 자동생성)		온라인 신청시 입력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용량 50MB 유의)
② 사업계획서			
③ 신청유형별 증빙(대학발 창업 또는 지역 일반) - 대학발 창업 : 소속, 인프라, 기술, 투자 중 1개 증빙 - 지역 일반 : 주민등록등본			
④ 부동산임대업 보유자(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파일 첨부	
서류 평가 면제	•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 공고일('24.1.12.)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역자 •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 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 협업 추천 예비창업자		
	• '23년 도전! K-스타트업 국방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자(1점)	창업진흥원에서 확인 (별도 제출 불필요)	
서류 평가 가점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평가	② 발표평가	③ 최종선정
중심대학별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추천	발표+질의응답 (창업중심대학별 별도안내)	발표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창업중심대학 창업진흥원
※ 요건 및 자격검토는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며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탈락 처리		
※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대상 >

구분	대상자	점수	비고
면제	• 과학기술전문사관 의무복무를 마친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확인서 창업진흥원에서 확인 (별도 제출 불필요)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전역자		
	• '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가점	• 창업중심대학 협력기관 협업 추천 예비창업자	1점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팀, 국방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통합본선 진출팀의 경우 팀장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에 한하여 우대사항 인정

-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참석 : 예비창업자(신청자)

** 평가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진행 가능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및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중심대학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행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전략 등
팀 구성	• 신청자 및 팀원(고용 예정 등)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최종선정

- 모집유형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선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통보일 포함, 3일차 17시까지) 이내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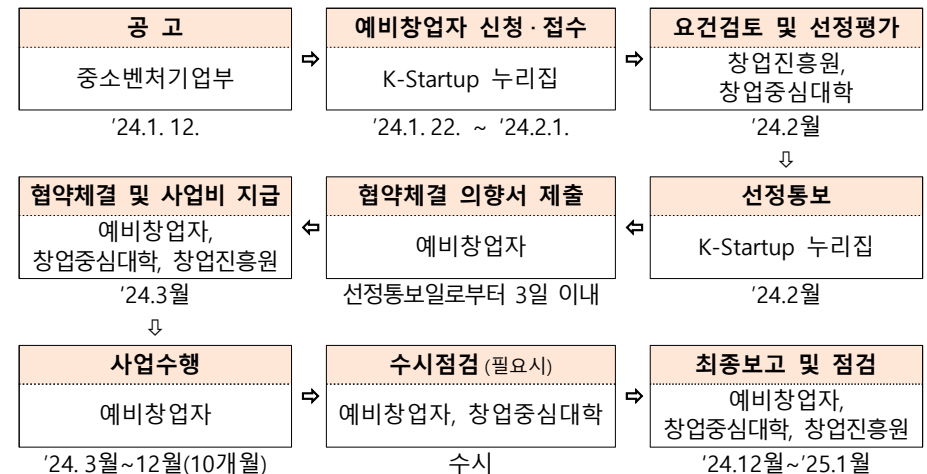
-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를 통해 차순위자(예비후보자)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창업중심대학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선정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 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 체결) 불가하며 단, ‘23년까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평가과정에 (발표평가 등)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창업중심대학에 신청 가능
- 창업중심대학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녹화 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지원사업 서류 및 발표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창업중심대학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30일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공고일 ("24. 1. 12.) 기준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선정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주업종, 부업종)과 다른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 최근 3년 폐업 경험 있는 선정자 대상 협약시 이종업종 창업 이행 등 확약 예정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신청(대표)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기간이 14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중단 또는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창업중심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신청 창업중심대학이 운영하는 사업화 전용 프로그램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중심대학(주관기관) 담당자

권역별 광역자치체 구분	창업중심대학	연락처 1	연락처 2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한양대학교	02-2220-2878
		성균관대학교	031-290-5859
강원권	강원	강원대학교	033-250-8967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서대학교	041-540-9933
		한남대학교	042-629-8562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북대학교	063-219-5529
대경권	대구, 경북	대구대학교	053-850-4381
동남권	울산, 부산, 경남	부산대학교	051-510-3023
		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6

참고 1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자)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화)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참고 3

창업여부 기준표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 cert.k-startup.go.kr / 문의처 : 1811-3773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업아님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창 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	창 업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창 업
	자회사 여부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동종유지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이종	창 업
	회사형태 변경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